

「20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」 지급 개시

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1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 추진 계획이 승인·통보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업무를 시작하였다. 이에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.

■ 사업개요

1. 목적

-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쇠고기·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 필요
- 고급육 생산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,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
- 2000년 이후 돼지고기 대일 수출중단 및 2003년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이후 고돈가

형성에 따라 양돈농가의 돈육 품질향상 의지 약화

2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 거세우종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
- 돼지고기 고품질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돈육 품질향상

■ 주요내용

구분	소	돼지
시행기간 및 지급대상자	2009. 1. 1 ~ 12. 31. 단성돈	
지급금액 (1두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우 : 1등급 200천원, 2등급 100천원 • 육우 : 1이상등급 200천원, 1등급 100천원 	1등급 10천원
지급 유효기간	「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」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- 2개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대상자가 지역 농·축협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장려금 미지급	
필요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산농가·법인인 지역 농·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「소생산자확인증명서」(이력제 미등록우에 한함) 또는 「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」를 발급 받아 출하 시마다 제출 • '09. 6. 22부터는 '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력제 위탁기관으로부터 「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」를 발급 받아 출하 시마다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산농가·법인인 지역 농·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연간 출하하여 누수가 기록된 「돼지생산자확인 증명서」를 발급 받아 최초 출하시 한번만 제출
제한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력제 등록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• 3개월 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• 지역 농·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농·축협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• 출중감사 결과 돈육함량 안정률이 80% 미만이거나 배태율 2과 대상자

○ 이 밖에 생산농가 및 법인, 등급판정 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

-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,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, 농협중앙회, 수입하여 사육한 소와 돼지

- 「생산자 확인 증명서」를 발급하는 생산자 단체 : 지역 농·축협, 이력제 대행기관(132개) 및 전국한우협회·대한양돈협회·한국낙농육우협회의 시·군지부, 경기한우협동조합, 경북대구 한우협동조합,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, 전북한우협동조합, 충북한우협동조합(이외에서 단체에서 발급된 「생산자 확인 증명서」는 인정되지 않음)

- 소를 출하하는 경우 이력제 미등록우는 '09. 6. 21까지는 「소생산자 확인 증명서」를, 이력제 등록우는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「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」를 발급받아 제출. 그러나 '09.6.22부터는 반드시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「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」를 제출

- 소 사육농가는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후 3개월 이상의 사육기간(이동신고 완료)이 경과하여야만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「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」를 발급 받을 수 있음

- 돼지의 경우 최초 출하 시 제출되는 「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」에 출하가능두수를 기록 해야 하고 출하두수의 누적두수가 이를 초과 할 경우에는 「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」발급 자체가 안 됨

- 장려금 지급편의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출하·등급 판정 받았고 장려금 신청 요건

을 충족한 생산농가 및 법인은 '09.3.31일까지 「생산자확인 확인서」 및 「개체식별확인증명서」를 발급받아 출하했던 작업장의 등급판정 사에게 제출하면 해당 개체에 대한 「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」를 발급 받을 수 있음

○ 품질고급화 장려금 자금신청 및 배정단계
- 생산농가 및 법인 :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통보 받은 「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」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통보서에 명시 되어 있는 농·축협에 장려금 지급 요청

- 지역 축협 : 사업대상자(생산농가 및 법인)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요청을 하면 우선 자체자금으로 가지급 할 수 있으며, 지역 농협으로부터 요청 받은 자금지급액과 함께 「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자금지급 요청

- 지역 농협 : 사업대상자(생산농가 및 법인)로부터 지급 요청 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우선 자체자금으로 가지급 할 수 있으며, 지급내역에 대하여 「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지역 축협에 자금지급 요청

- 축산물등급판정소 :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아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

○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「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) > 이용자맞춤서비스 >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> 공지사항 > 2009년도 사업 시행지침서입니다. 다운로드 후 「제4권 수산-축산분야」 또는 「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(www.kormeat.com) > 공지사항 > No.209, 210, 211」에서 확인(문의전화 : 축산물등급판정소 사업관리팀 송종원 031-390-5532)